

'98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承認의件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8. 5. 13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8. 5. 13
- 라. 上程日字 : 1998. 5. 14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會計課長 韓基宅)

가. 提案理由

- 서산시 읍내동과 예천동에 위치한 시유 잡종재산이 현대 산업개발(주)에서 시행중인 아파트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매수신청자인 현대산업 개발(주)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조성 및 시재정확보에 기여

나. 主要骨子

- 매각 재산 내역

재 산 표 시 소 재 지	필지수	지목	시 면 적	매각대 상변적	추정가액 (천원)	매 각 시 기	매 각 사 유	매 수 희망자

'98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번호	재산표시			매각대상 면적	추정 가격	매각각유	매수 신청자	비고
	위치	지목	지적					
계	9필지		3,813	3,813 (1,155평)	521,219			
1	읍내동 815-17	묘	1,453	1,453	216,497	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	현업개발 (주) 유인균	
2	읍내동 815-18	"	10	10	1,490	"	"	
3	읍내동 815-10	"	235	235	17,390	"	"	
4	읍내동 815-20	"	29	29	2,146	"	"	
5	예천동 496-27	"	16	16	2,176	"	"	
6	예천동 496-34	"	793	793	107,848	"	"	
7	예천동 496-35	"	49	49	6,664	"	"	
8	예천동 496-36	"	761	761	103,496	"	"	
9	예천동 496-37	"	467	467	63,512	"	"	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서산시 읍내동 815-17번지의 3필지와 예천동 496-27번지의 4필지 3,813㎡는 현대산업개발(주)에서 사업시행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지구내 시유토지로 현대산업개발(주)이 서산시유토지를 매입하여 매입토지 대부분을 도로와 공공용지 등으로 조성 사업시행 종료후 서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본건은 매각 승인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없었음

5. 討 論 : 없었음

6. 少數意見 : 없었음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